

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관련 변경사항 공지 계획

- 특별 귀화용 종합평가 시행 및 동포방문(C-3-8) 사전평가 제한 -

'20. 5. 1.(금) 법무부 이민통합과

1.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분 지역의 평가장 임차가 어려워짐에 따라 '20. 5. 23.(토) 종합평가를 아래와 같이 특별 귀화용 종합평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.
2. 또한, '20. 7. 1부터 시행 예정이던 동포방문(C-3-8) 자격자의 방문취업(H-2) 체류자격 변경이 제한(불입, 체류관리과 공지 참고)됨에 따라, 6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동포방문(C-3-8) 자격자의 사전평가 참여 확대를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□ 결정 사항

○ '20. 5. 23.(토) 제4차 종합평가를 '특별 귀화용 종합평가'로 실시

- (응시대상) 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 후 종합평가 응시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 중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귀화 신청자

※ '19. 2. 8. ~ '19. 7. 23. 귀화신청자

- (접수방법 및 신청기간, 결과발표 등) 변동 없음

- (응시정원) 일부 지역은 평가장 임차의 어려움으로 정원 축소될 수 있음

※ 평가장 및 세부 응시정원은 '20.5.4.(월) 14:00 이후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홈페이지(www.kiip-test.org) 공지사항 참조

○ '20.6월부터 예정이던 사전평가 대상 확대 시행 취소

- 동포방문(C-3-8) 자격자는 외국인등록 후 사전평가 참여 가능

※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(H-2) 사증 신청 시 한국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이 1년으로 부여되며, 다음 체류기간 연장 시 한국어 입증서류를 제출

□ 참고 사항

- 금번 특별 종합평가 외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조속히 재개할 예정임

외국국적동포 체류제도 안내

2020. 4. 체류관리과

현재 시행중인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제도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와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.

□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배정 받은 사람

- 외국인등록 후 1년이 경과해야 재외동포(F-4)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.
- 동포방문(C-3-8) 자격에서 방문취업(H-2) 및 재외동포(F-4) 자격변경은 제한됩니다(국가 공인 자격증 소지자는 제외)
- ※ '20. 7. 1.부터 시행 예정이던 방문취업(H-2) 자격변경은 재외공관 사증발급으로 변경 시행됩니다(하이코리아 공지사항 770번 참조)

□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관련

-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(H-2) 또는 재외동포(F-4)자격 신청시 또는 국내에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시 한국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(면제대상은 제외)은 체류기간을 1년 이내로 부여됩니다. 이후 체류기간연장시 제출하면 체류기간을 3년 이내에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.